

재정경제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5개의 회계예규를 개정(2005.6.17)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7-19, 2005. 6.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심사기준등) ① (상략)</p> <p>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BB-이상</p>	<p>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p>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현행					개정				
<p>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p>					<p>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p>				
신용평가등급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공사규모 (추정가격 기준) 별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 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 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	AAA	15.0	12.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A	A1	AA	15.0	12.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	A2	A	14.0	11.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0	11.5
BBB	A3	BBB	13.0	11.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0	11.0
BB	B	BB	12.0	1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0	11.0
B	B-	B	11.0	9.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11.0	9.0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0.0	8.0	CCC이하	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8.0
<u>〈신 설〉</u>					<u>부 칙</u>				
					<p>제1 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제2 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p>				

적격심사기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9-16, 2005.6.1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 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 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 의 표에 의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 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 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 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 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 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 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 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 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 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 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 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 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 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 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 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 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현행						개정					
신용평가등급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공사규모 (추정가격 기준) 별 공점		
회사체	기업 어음	기업 신용 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공점						1,000 억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 억원 미만
			1,000 억원 이상	1,000 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A	-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3.0	35.0
AA+, AAQ, AA-	A1	AA+, AAQ, AA-	29.0	32.0	34.0	AA+, AA0, AA-	A1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 하는 등급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A+	A2+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28.6	31.6	33.6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A0	A20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3	31.3	33.3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A-	A2-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A-에 준 하는 등급	28.0	30.0	33.0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BBB+	A3+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5	30.5	32.5
						BBB0	A30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0.0	32.0
						BB+, BB0	B+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B+, BB0에 준 하는 등급 이하	25.7	28.7	30.4
						BB-	B0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28.0	29.5
						B+, B0, B-	B-	회사체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B+, B0, B-에 준 하는 등급 이하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체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0	24.0	25.0
<u>〈신 설〉</u>						<u>부 칙</u>					
						<u>제1 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u>					

현 행	개 정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 부터 적용한다.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3-5, 2005.6.1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제한기준) ①~④(상략) 〈신 설〉	제3조(제한기준) ①~④(현행과 같음) ⑤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 조제1 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 다.
〈신 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 17일부 터 시행한다.

출처: 좋은생각



거짓말 머리로 말하는 검은 거짓말
가슴으로 말하는 하얀 거짓말
그를 속이고 나를 속이지만
때로는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짓말

법령 정보
ACT INFORMATION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1-6, 2005. 6.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 ② (상략) <신 설></p>	<p>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 ----- ----- ----- 1. ~ 5. (상략) <신 설></p>	<p>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사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6. (상략) ② ~ ④ (상략) <신 설></p>	<p>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p>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05-9, 2005.6.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① (상략) ②----- ----- ----- ----- ----- ----- ----- ----- ----- --있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 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 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 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 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 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 계액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 17일부 터 시행한다.</p>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내용 안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133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5. 13 ~ 6. 23
- 관련문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Tel. 02-509-7236)
- 전문참조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정보미당/법령자료/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단속기관을 설립하고,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41 호, 2005.3.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령

- 1)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2) 정기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인증·안전검사 표시에 관한 보고·검사 업무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위탁함.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

- 1) 안전인증대상품목에 안전성이 요구되는 음식물처리기, 반신욕조 등 15품목을 추가함.
- 2) 안전인증 신청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3) 공장심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
- 4)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5) 정기검사 이외에 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6) 안전인증취소 및 개선명령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노동부공고제2005-174 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6. 11 ~ 7. 1
- 관련문의 : 노동부 안전정책과(Tel. 02-503-9744/5)
- 전문참조 : 노동부 (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및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근로자건강확보 및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영업비밀에 의한 비공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제도 신설

- (1)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을 받아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 및 수행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2)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공표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 (1) 종전에는 법령을 위반한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여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경우 대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유지·증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방호장치 성능검정 면제대상 확대

- (1)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는 성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방호장치 성능검정기관이 경인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 소재하는 방호장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치 제조업체의 경우 원거리 출장등으로 인해 시간 및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타 법령에 의해 지정받은 공인안전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도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3) 방호장치 제조업체의 성능검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 (1) 종전에는 고시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주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결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질의 명칭 등이 기재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함.
- (2)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칭 등을 기재토록 함.
-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정보제공 등 근로자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쓰레기통 비우기

비우는 일 없이 채우기만 하는 삶과 깨끗이 비우고 다시 채우는 삶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손으로 싹 씻어 놓은 날, 마음도 경안하여 얼마나 가볍고 가벼우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내 몸을 물로 씻고 햇볕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좋은생각